

# 1. 농약의 품목명 변경

농약명	품목명(기호)		농약명	품목명(기호)	
	현행	변경		현행	변경
종자독약	비노람수화제	베노람수화제 (수화제 1호)	지오락수화제	지오락수화제 (액상화제 9호)	
	지오락수화제	지오락수화제 (수화제 2호)	가스펜 분제	가스펜 분제 (분제 10호)	
	티시엘 유제	티시엘 유제 (유제 3호)	잎집무늬마름병약	네오진 액제 (액제 1호)	
	아이비 유제	아이비 유제 (유제 1호)	네오진 분제	네오진 분제 (분제 1호)	
	아이비 분제	아이비 분제 (분제 1호)	바리신 액제	바리신 액제 (액제 2호)	
	아이비 입제	아이비 입제 (입제 1호)	바리신 분제	바리신 분제 (분제 2호)	
	부라딘 액제	부라딘 액제 (액제 2호)	흰빛잎마름병약	훼나진수화제 (수화제 1호)	
	가스신 액제	가스신 액제 (액제 3호)	메디 수화제	메디 수화제 (수화제 2호)	
	가스신 분제	가스신 분제 (분제 3호)	메디 분제	메디 분제 (분제 2호)	
	에디펜 유제	에디펜 유제 (유제 4호)	테람 수화제	테람 수화제 (수화제 3호)	
도열병약	에디펜 분제	에디펜 분제 (분제 4호)	잘록(입고)병약	다찌가렌액제 (액제 1호)	
	베나솔 입제	베나솔 입제 (입제 5호)	다찌가렌분제	다찌가렌분제 (분제 1호)	
	라브사이드수화제	라브사이드수화제 (수화제 6호)	이화명나방약	메프유제 (유제 1호)	
	라브사이드분분제	라브사이드분분제 (분제 6호)	메프분제	메프분제 (분제 1호)	
	이소란 유제	이소란 유제 (유제 7호)	파프유제	파프유제 (유제 2호)	
	이소란 입제	이소란 입제 (입제 7호)	다수진 분제	다수진 분제 (분제 3호)	
	트리졸수화제	트리졸수화제 (수화제 8호)	다수진 입제	다수진 입제 (입제 3호)	
	트리졸 분제	트리졸 분제 (분제 8호)	펜치온 유제	펜치온 유제 (유제 4호)	

농약명	품목명(기호)		농약명	품목명(기호)	
	현행	변경		현행	변경
멸구약	칼탑 수용제	칼탑 수용제 (수용제 5호)	혹명나방약	테라빈 분제	테라빈 분제 (분제 1호)
	칼탑입제	칼탑입제 (입제 5호)		피리다 유제	피리다 유제 (유제 2호)
	칼탑분제	칼탑분제 (분제 5호)	도열병· 이집무늬 마름병약	지오신수화제	지오신수화제 (수화제 9호)
	카보입제	카보입제 (입제 6호)	가스진 분제	가스진 분제	가스진 분제 (분제 1호)
	그로메 유제	그로메 유제 (유제 7호)	이화명나방· 도열	가스메 분제	가스메 분제 (분제 1호)
	그로메 입제	그로메 입제 (입제 7호)	병약	카드라 분제	카드라 분제 (분제 2호)
	그로포 입제	그로포 입제 (입제 8호)		히노짓 분제	히노짓 분제 (분제 3호)
	지오신 입제	지오신 입제 (입제 9호)	멸구·도 열병약	아이엠 분제	아이엠 분제 (분제 1호)
	엘아이피씨분 분	엘아이피씨분 제(분제 1호)	멸구·일 집무늬마 름병약	바리비 분제	바리비 분제 (분제 1호)
	엘아이피씨입 입	엘아이피씨입 제(입제 1호)	논잡초약	이사디 액제	이사디 액제 (액제 1호)
매미충약	나크분제	나크분제 (분제 2호)		니트펜 입제	니트펜 입제 (입제 2호)
	다수진 유제	다수진 유제 (유제 3호)		푸로닐 유제	푸로닐 유제 (유제 3호)
	비피유제	비피유제 (유제 4호)		이사피수화제	이사피수화제 (수화제 4호)
	비피분제	비피분제 (분제 4호)		부타입제	부타입제 (입제 5호)
	피리엠 분제	피리엠 분제 (분제 5호)		벤치오 입제	벤치오 입제 (입제 6호)
	마크분제	마크분제 (분제 6호)		엠오입제	엠오입제 (입제 7호)
	며루단수화제	며루단수화제 (수화제 7호)		피페린 입제	피페린 입제 (입제 8호)
	호리박살분제	호리박살분제 (분제 1호)		모리스 입제	모리스 입제 (입제 9호)
	파프분제	파프분제 (분제 2호)		모개산도입제	모개산도입제 (입제 10호)

농약명	품목명(기호)		농약명	품목명(기호)	
	현행	변경		현행	변경
바이스	입제	바이스 입제 (입제11호)		퍼플 입제	퍼플 입제 (입제14호)
옥사존	유제	옥사존 유제 (유제12호)		부타-300유제	부타 300유제 (유제15호)
벤타존	입제	벤타존 입제 (입제13호)		그로트 입제	그로트 입제 (입제16호)
벤타존	액제	벤타존 액제 (액제13호)			

## 2. 농약명 변경품목

품목명	규격	농약명	
		현행	변경
피리포 유제	25%	배추흰나비 약	잎말이나방약
피리다 유제	30	심식나방약	혹명나방약
피레스 유제	5	배추흰나비 약	잎말이나방약

## 3. 농약사용량 및 희석배수 변경

농약명	품목명	규격	적용병해충명	사용량	
				현행	변경
진딧물약	피리모수화제	25%	배, 진딧물 감자, 진딧물	700배 800	1,500배 1,500
응애약	싸이틴수화제	25	감귤응애류	1,000	1,500
	펜부탄수화제	50	감귤응애	1,000	2,000
논·잡초약	퍼플입제 (입제14호)	5	벼, 논잡초 (일년생 및 다 년생 잡초)	3kg	2kg
생장촉진약	지베레린수용제	3.1	포도(베라웨어) 생장촉진 딸기, 생장촉진	10,000배 (100ppm) 100,000~ 143,000	310배 (100ppm) 3,100~ 4,430 (7~10)

농약명	품목명	규격	적용병, 충명	사용량	
				현행	변경
			토마토생장촉진	100,000	3,100 (10)
			오이, 쑥기억제	20,000	620 (50)
			감자, 생장촉진	200,000~ 333,000	6,200~ 10,330 (3~5)
			국화, 생장촉진	10,000~ 14,300	310~440 (70~100)
낙과방지	비나인수화제	85	사과, 낙과방지	500	1,000

적용 병해충 추가품목 (83페이지에서 계속.)

농약명	품목명(기호)	규격	적용 병해충의 범위	사용량	
				회 대 수	식 사 용 량
웅 애 약	지노멘수화제	25	오이, 헌가루병	3,000	
담배나방약	프로펜유제	43	오이, 진딧물	1,500	
논잡초약	옥사존유제 (유제12호)	12	기계이앙, 논잡초		500ml
작물건조약	다이코액제	20	감자, 경엽건조	500	
멸구도열병약	아이엠분제 (분제 1호)	4	벼, 애멸구	3kg	
			벼, 골동매미충	3	
종자소독약	티시엠유제 (유제 3호)	30	복재, 곰팡이 (청병 균, 부패병균, 곰팡 이류)	200 (250g/ m <sup>2</sup> )	

## 4. 농약의 품목 및 적용 병해충 추가

### 가. 신규품목

농약명	품목명	유효성분	부류	현유량	병충 또는 증상	제작일기준	적용 병해충의 범위		사용량 회수	사용량 액화보증기간	비고
							이상	4.34% 사과, 청무鞠나무병			
진주나무 납법약	옥시동수화제8 copper	Hydroxy quinolin	50%	체면활성제 안정제 증량제	4.34% 사과, 체면활성제 5.0 나무지	이상	4.34% 사과, 체면활성제 5.0 나무지	500㎖	3년		
화가루 약	페니리 아크 부	유제 [ $\alpha$ -(2-chloro phenyl) $\alpha$ -(4-chlorophenyl) -5-pyrimidine methanol]	12.5	유 액 인용 증량	체 제 포도 오이, 현가루병	6.0 나무지 제 포도 현가루병 현가루병	사과, 현가루병 포도, 현가루병 현가루병	3,300 3,300 4,000	5		
탄저병 악 수	캡탈액 제 화 부	N-Tetra chloro ethyl thio tetra hydro phthalimide	39	체 보 안 인 증 용 증	면활성제 조 정 량 제	3.0 0.3 0.6 10.0 나무지	사과, 현가루병 포도, 현가루병 현가루병	600 600 500	3		
이화 나방 약	[자오신 일제 9호]	5-Dimethyl amino -1,2,3-trithiane hydrogen oxalate	3	체 색 증 량 (포래)	체 제 소 제 나무지	2.5 비, 0.1 비, 나방 나방	이화병나방 현가루병 현가루병 현가루병 (포래)	3~5 ㎍/10a 4	3		

농약명	품목명	유효성분			부재명	명칭 또는 화학구조	적용병해충의범위	사용량		약효보증기간
		종류	함유량	부용량				회수	사용량	
이화명나박	칼탈분제(분제5호)	제1,3-bis(Carbamoylthio)-2-(N,N-dimethyl amino)propane hydro chloride	2	안정제 보증량	2.0 2.0 내마지비	이화명나박 혹명나박 벼잎벌레	3~4	3		
진딧물약	헵테노유제	(7-chloro-bicyclo-(3,2,0)-hepta-2,6-dien-6-yl)dimethyl phosphate	50	유화제 안정제 보증량	15.0 4.0 내마지	사과, 진딧물 배추, 진딧물	2,000 1,500	2		
진딧물약	디크로로후연제	0,0-dimethyl-2,2-dichloro vinyl phosphate	30			미닐하우스오이, 가지 벗풀	50g/ 150m <sup>3</sup>	2	수입 외교부	
과일작물	트로실수화제	5-Bromo-3-sec-butyl-6-methyl uracil	80	체면활성제 보증량	3.6 4.0 내마지	감귤, 벌집초		3	경업처 리... 300g 토양처 리... 200g	
벌집초약	프로린수화제	2,4-bis(isopropyl amino)-6-(methylthio)-s-triazine	50	체면활성제 보증량	5.0 내마지	당근, 벌집초	180g	2		

농약명	품목명	유효성분	부용량	제제	적용 범위	사용량	약효보증기간	비고
발자초 약	트리린 유제 $\alpha, \alpha$ -trifluoro-2, 6-dinitro-N,N-dipropyl-p-toluidine	44.5% 헥실렌	5.0% 체나무지	납리작보리, 밭잡초	250ml	3		
발잡초 약	크로락 액제 3-Amino-2, 5-dichloro benzoic acid	21.6% 체나무지	체나무지 콩, 밭잡초		1, 000ml	3		
토소독약	사이이론충제 Methyl bromide .. 14% + chloropicrin .. 32%	46		토마토, 시들음병	30l	2	수입 외제 품	
생장촉진剂	장도마도톤액제 p-chloro phenoxy acetic acid	0.15% 체나무지	체나무지 가지, 생장촉진	토마토, 생장촉진	50-100ml	5		

## 나. 적용 병해충 추가품목

농약명	품목명(기호)	규격	적용병해충의 범위	사용량	
				회	선
				수	사용량
도열병약	베나솔입제 (입제 5호)	6%	벼, 도열병(육묘상)		30g/ 상자
이화명나방약	카보입제(입제 6호)	3	벼, 줄기굴파리		4kg/ 10a
흑명나방약	피리다유제 (유제 2호)	30	벼, 흑명나방 벼, 이화명나방 오이, 오이잎벌레	750배 750 750	750 750 750
멸구약	비피분제(분제 4호)	2	벼, 벼멸구		4
멸구약	엠아이피씨입제 (입제 1호)	4	벼, 애멸구(묘판)		3
흰가루병약	스팟트수화제	75	사과, 접무늬낙엽병	800	
흰가루병약	베노밀수화제	50	수박, 탄저병	2,000	
잿빛빈줄수화제		50	오이, 젯빛곰팡이병	1,000	
곰팡이병약					
노균병약	메타실수화제	25	감자, 역병	1,000	
결동근무늬병약	근구퍼수화제	77	오이, 노균병	1,000	
탄저병약	만코지수화제	75	감자, 역병 벼, 도열병 벼, 깨씨무늬병	500 500 500	
잎말이나방약	피레스유제	5	사과, 잎말이나방	1,000	
깍지벌레약	기계유유제	95	감귤, 깍지벌레	150	
흰불나방약	주론수화제	25	사과, 잎말이나방	1,250	
귤귤나방약	오메톤액제	50	사과, 진딧물	1,000	
진딧물약	아시트수화제	50	사과, 진딧물	1,000	
진딧물약	피리모수화제	25	배추, 진딧물	1,500	
진딧물약	디설폰입제	5	벼, 애멸구(육묘상자)		100g/ 상자
진딧물약	모노포액제	24	사과, 진딧물	800	
잎말이나방약	피리포유제	25	사과, 잎말이나방 사과, 진딧물	500 500	
잎말이나방약	텔타린유제	1	사과, 진딧물 수목, 흰불나방	1,000 1,000	

<79페이지에 계속>

# 농약의 포장 및 표기기준

제정 : 78.7.13 국립농업자재검사소고시 제83호

변경 : 79.1.15 " 고시 제87호

79.2.12 " 고시 제89호

80.2.19 " 고시 제80-1호

80.5.27 " 고시 제80-6호

81.4.8 " 고시 제81-5호

81.5.9 " 고시 제81-6호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약의 포장 및 표

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관리와 실수요자의 농약선택 및 안전사용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장 농약의 포장기준

제 2 조(포장의 재질 및 봉합) ① 농약의 용기는 내용물이 변질 또는 누출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야 하며 제형별 날포장의 재질 및 봉합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형별	용기	재질	봉합방법	
분체 입체	2~3kg	○크라프트지 2중지대	○크라프트지 : KS규격 품(평량 80g/m <sup>2</sup> ) 내 1면지는 0.02mm 이상 PE 또는 APP 코팅지  ○PE내봉입 크라 프트지 2중지대	○주입구를 2번 접어 서 특수접착제 또는 OPP테프 봉합  ○크라프트지 : KS규 격품(평량 80g/m <sup>2</sup> ) ○PE 0.03mm 이상의 내봉투
			○주름지를 덜개로 한 미싱봉합 ※쇠붙이로의 봉합은 금지한다.	

	4~5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크라프트지 3중지대</li> <li>※상자당 4kg × 6대 5kg × 4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크라프트지 : KS규 격품(평량 80g/m<sup>2</sup>)</li> <li>○ 내 1면지는 0.02mm 이상 PE 또는 APP 코팅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입구를 2번 접어서 특수접착제 또는 OPP 테프봉합</li> <li>○ 주름지를 덜개로 한 미싱봉합</li> <li>※ 쇠붙이로의 봉합은 금지한다.</li> </ul>
	7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크라프트지 3중지대</li> <li>※상자당 7kg × 4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크라프트지 : KS규 격품(평량 80g/m<sup>2</sup>)</li> <li>○ 내 1면지는 포리에 치 렌크라프트 방습지 (KSA : 1505) 2종 25 이상</li> <li>○ 호흡지대로 제대방 법은 KSA1541에 의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입구를 두번 접어 서 특수접착제 또는 테프봉합</li> <li>○ 지대의 위 아래는 반 드시 보강지로서 평 량 115g/m<sup>2</sup> 이상의 크라프트 주름지 또 는 100g/m<sup>2</sup> 이상의 크라프트지를 사용 하여 미싱봉합한다.</li> </ul>
	15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크라프트지 4중지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크라프트지 : KS규 격품(평량 80g/m<sup>2</sup>)</li> <li>○ 내 1면지는 포리에 치렌 크라프트 방습 지 (KSA : 1505) 2종 25이상</li> <li>○ 봉제지대로 제대방 법 KSA : 1541에 의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대의 위 아래는 반 드시 보강지로서 평 량 115g/m<sup>2</sup> 이상의 크라프트주름지 또 는 100g/m<sup>2</sup> 이상의 크라프트지를 사용 하여 미싱봉합하고 필요에 따라 접착테 프를 붙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철납처리를 할 수 있다.</li> </ul>
	30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크라프트지 5중지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크라프트지 : KS규 격품(평량 80g/m<sup>2</sup>)</li> <li>○ 내 1면지는 포리에 치렌 크라프트 방습 지 (KSA 1505) 2종 25이상</li> <li>○ 봉제지대로 제대방 법 KSA1541에 의 함.</li> </ul>	

- ※1. 약제중 농약성분이 유출될 우려가 있거나 흡습성 또는 조해성이 있는 농약에 대해서는 내면지가 0.03mm. P.E라미네이션 된것을 사용하고 특수접착제로 붕합한다(4~5kg 이하).
2. 지대는 완전 충진후의 여석율이 20%이상이어야 한다.
3. 7kg이상의 포장지대는 다음
- 예시와 같이 재사용 금지를 표시하는 문구를 포장지 상단에 붉은 글씨로 표기하여야 한다.  
“예”이 포대는 농약포장지이므로 재사용을 금하고 과기하십시오.
4. 이 기준에 명시 되지 않은 분입체 포장지를 사용하고자 할때는 명시된 차상급 규격의 기준에 준한다.

제형별	용기	재질	봉합방법
유액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리병 및 합성 수지병</li> <li>○용도별로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비선택성제 초제)는 그 표시를 병상 단부 위에 각인 또는 셀크인쇄하고 용량표시눈금을 표기하여야 한다. (100ml미만 병은 제외 한다)</li> <li>○맹독성 농약으로 구분된 농약은 0.03mm이상의 PE봉투로 재포장하여야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계병으로 하여야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E 속마개와 플라스틱 겉마개로 밀접한다.</li> <li>○알미늄마개로 밀접하거나 수축테프 또는 자체 접사필름으로 붕합한다.</li> <li>○병뚜껑 색깔은 약제별로 살균제는 분홍색, 살충제는 녹색, 제초제는 황색, 생장조정제는 청색, 혼합제 또는 동시방제용 약제라 함은 그 유효성분이 1종이나 각각 다른 목적의 약제효과를 갖는 농약을 말한다. 다만, 알미늄 마개는 제외한다.</li> </ul>

※ 농약병에 표기하는 용도별 글자의 크기는 품목명[수도용 농약의 경우는 농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기호(이하 “품목기호”라 한다)] 글자의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 제초제 농약병은 타 농약병과 구별될 수 있도록 병모양을 변

경 제작한다.

※ 혼합제라 함은 그 유효성분이 2종이상이고 각각 다른 목적의 약제효과를 갖는 농약을 말하며 동시방제용 약제라 함은 그 유효성분이 1종이나 각각 다른 목적의 약제효과를 갖는 농약을 말한다.

제형별 제	용 기	재 질	봉 합 방 법
수화(용) 제	○은박코팅봉투  ○OPP코팅봉투  ○크라프트지 2중봉투  ○PT코팅봉투  ○모조지 PE 코팅봉투  ○PE내봉입 크라프 트지 2중봉투	○PE : 0.05mm이상 ○알미늄 : 0.007mm이상 ○PT 또는 OPP: 0.02mm 이상 또는 PET는 0.012 mm이상  ○OPP : 0.02mm이상 ○PE : 0.03mm이상  ○크라프트지 : KS규격품 (80g/m <sup>2</sup> ) ○내 1면지는 0.03mm PE 또는 APP코팅지  ○PT : 0.02mm이상 ○PE : 0.05mm이상  ○PE : 0.03mm이상 ○모조지 : KS규격품 (70g/ m <sup>2</sup> )  ○크라프트지 : KS규격품 (80g/m <sup>2</sup> ) ○PE : 0.03mm이상의 봉 투	○열봉접기봉합 ○주입구를 두번 접 어서 특수접착제봉 합 ※쇠붙이 또는 미성 봉합은 금지한다.
※수용제 또는 경시 변화가 심한 농약 은은박코팅봉투로 포장하여야 한다.			
② 여러개의 날포장을 넣는 걸 포장(꼴판지 상자)은 날포장간의 부착 및 접촉을 막기 위하여 다 음 각호와 같이 포장하여야 한다		○기타농약 : 2중 양면꼴판지 (K.S.A.1531) 3종 이상	
1. 꼴판지 상자 ○유제·액제농약 : 2중 양면 꼴판지(K. S. A. 1531) 2종 이상		2. 칸사리 여러개의 날포장을 꼴판지 또는 중간상자에 넣을 경우 날포장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제·액 제농약은 K.S.A.1502의 양면꼴판 지(2종), 수화(용)제 농약은 2종	

양면 글판지(2종)로 하거나 합성  
수지 칸사리, 기타칸사리 등을 사  
용하여야 한다. 다만 100ml이하의  
소포장농약에 대하여 낱포장 상  
자를 사용할 때는 예외로 한다.

### 3. 밧 트

골판지상자 상하 부위에 양면  
골판지(2종) 각1매를 넣어야 한다.

#### 4. 중간상자

100ml(100g)이 하의 유리병 토  
씨포장 또는 소포장 농약에 대하  
여는 날포장을 10개 이내씩 넣는  
중간상자를 사용할 수 있다.

## 5. 겉포장의 결박

상하부의 안 날개와 바깥날개를  
접착제로 붙이거나 봉합침으로 봉  
합하고 다음에 테프첨부 또는 배  
드로 결박하여야 한다.

○ 테프 첨부 : 천감테프(K.S.A. 1523)나 종이감테프(K.S.A. 1522) 또는 동등이상의 테프를 사용하되 그 폭은 50mm이상으로 한다.

○밴드결박: PP밴드로 가로 2 줄 결박한다.

제 3조(자체점사필증의 재질 및 부착부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사필증의 재질 및 부착부위는 다음과 같다.

제형별	재 질	부 착 부 위
유제 액제	○알미늄마개 밀전시 : 나사부위에 검사필증인쇄	○알미늄마개 쇠링
	○PE수축테프에 검사필증인쇄	○PE마개와 결마개 밀전후 수축테 프를 씌워서 열수축 시킨다.
	○종이검사필증인쇄	○결마개 밀전후 개봉부위에 특수 접착제로 붙인다.
분제 입제	○OPP접착테프에 검사필증인쇄	○제 2조 제 1항의 봉합위치에 세 로토 붙인다.
	○종이검사필증 인쇄	○개봉부위에 특수접착제로 붙인다.
수화 (용)제	○날포장상단의 열봉접위치에 검 사필증 인쇄	
	○종이검사필증 인쇄	○개봉부위에 특수접착제로 붙인다.

### 제 3 장 농약의 표기기준

#### 제4조(포장의 표기) ①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포장

의 표시 사항은 한글로 표기하고  
되 계량단위는 CGS단위로 영문

표기할 수 있으며 라벨의 표기 사항을 날포장 표면에 인쇄할 수 있다.

② 농약포장의 라벨 표기 내용은 사전에 농축진홍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전단, 팜플

렛 등 각종 선전문은 사전에 농약 공업 협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농약을 약제별로 식별하기 쉽도록 다음과 같이 날포장 라벨의 바탕색깔을 구분한다.

약제별	라벨 바탕색깔	농약명·품목명 또는 품목기호		상표글자색깔	기타글자색깔
		띠색깔	글자색깔		
살균제	분홍색	녹색	백색	제조회사 자체선정	녹색
살충제	녹색	적색	"	"	회색
제초제	황색	"	"	"	"
생장조정제	청색	회색	"	"	"
맹독성농약	적색	"	"	"	"
기타약제	백색	녹색	"	"	"
혼합제 및 동시방제 용제	해당약제 색깔별 용	상당부위 색	"	"	하단부위 해당약제색

※ 수도용 농약의 품목명은 기타 글자의 색깔로 한다.

※ 맹독성농약, 고독성 농약(이하 “독성농약”이라 한다)과 작물잔류성 농약, 토양잔류성농약, 수질오염성농약(이하 “잔류성농약”이라 한다)의 띠색깔과 글자색깔 표기는 해당농약명 띠색깔 및 글자색깔과 동일색으로 한다.

○ 적용병해충의 범위(제초제, 생장조정제 및 약효를 증진시키는 자재에 있어서는 적용지역 또는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용량, 사용방법 및 사용시기, 주의사항, 안전사

용기준, 해독방법, 특징등 (분체, 입체, 수화(용)제는 약효보증기간란까지) 설명문은 백색바탕에 표기한다.

○ 농약포장의 라벨 표기 내용이 지워지지 않도록 특수 인쇄하고 병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특수 접착제로 부착하여야 한다.

#### 제5조(포장지 라벨의 표기방법)

① 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포장지 라벨 표기는 “별표 1”과 같이 하되 각 사항의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협공급분 농약은 우측상단에 농협마크를, 성분란 아래

에 공급처명을 기재한다.

2. 농약관리법시행령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성농약과 잔류성 농약은 좌측상단에 그 글자를 다음과 예시와 같이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표기한다.

“예시”

고 독 성 농 약	동
수질오염성	수질오염성

3. 맹독성 농약과 흡입독이 강한 농약은 포장지 상단 중앙에 흑색 바탕에 백색으로 국제적으로 표시되는 “백꼴” 표시를 한다.

4. 농약명, 품목명 또는 품목기호 및 상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한다.

5. 성분표기는 약효보증기간란 아래에 기타 글자크기(색)로 표기해야 한다.

6. 기타글자(설명문)는 일반적인 공통사항은 가능한 제외하고 설명문의 내용을 최소한도로 간결하게 표현하여 큰 글자로 표기해야 한다.

7. 주의사항 첫번째에 “이 농약은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를 포장지 설명문보다 1호 크게 표기한다.

8. 제품의 특성상 저온 또는 고온으로 인한 동결이나 경시변화가 심한 농약은 “주의사항”란에 그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9. 독성농약과 잔류성 농약은 특정란 밑에 적색글자로 “이 농약은 ○○○농약이므로 사용 및 보관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를 표기하여야 한다.

10. 적용병해충 및 사용란의 크기는 조절할 수 있으며 사용법 및 사용시기, 주의사항, 안전사용기준, 해독방법, 특정란의 위치는 여백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 ② 수도용 농약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1. 품목기호는 품목명란에 품목명 글자크기와 동일하게 표기한다.

2. 품목명은 유효성분란 옆에 다음 예시와 같이 표기하되 유효성분의 글자크기로 한다. 다만, 품목명과 상표가 동일한 경우와 앞으로 신규로 고시되는 품목(상표가 없음)은 상표란에 품목명을 표기하되 상표크기와 같이 한다.

“예시”

○품목명 표시

유효성분 : 디이소브리필 -1,

3-디지오린 -2- 0)

리텐미로네이트

(이소란입제) ..... 12%

○ 품목명과 상표가 동일한 경우

(품목명 :

③ 낱포장의 라벨크기 규격은

다음과 같이 하되 용기의 크

기에 따라 상대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제형별	포장단위	라벨의크기	농약명		상단에서 11mm부위
			띠의크기	띠의위치	
유체·액체	100ml	mm 62×145〃	mm 15×50〃		
	300〃	90×190〃	17×78〃	12〃	
	500〃	100×210〃 130×190〃	17×78〃 24×123〃	13〃 19〃	
제형별	품목명 또는 품목기호		상 표		독성 및 잔류성농약
	띠의크기	띠의위치	글자크기 의 기	글자위 치	띠의크기
유체·액체	9mm	상단에서 28mm부위	14 금 품목명 또는 품목기호 하 단		7 mm 상단에서 2mm부위
	11〃	31〃	16〃	"	8〃
	12〃	32〃	18〃	"	9〃
기타약제	15〃	45〃	20〃	"	12〃
					4〃

※ 상표는 다음과 같이 ( )내에 “상표”라는 글자를 반드시 표기하되 그 크기는 상표글자의 크기와 같다.

(상표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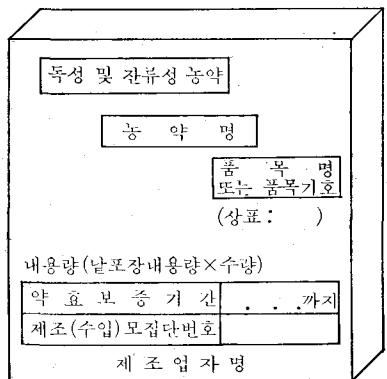
※ 상표는 품목명 또는 품목기호 띠 길이의 2/3 범위 내로 표기 한다.

※ 독성 및 잔류성농약, 농약명, 품목명 또는 품목기호 글자의 크기는 당해 띠 크기의 3분지 2 이상이어야 한다.

※ 유(액)제의 낱포장 중 마니라상 차를 사용할 때의 띠의 위치는 상단으로부터 4mm를 가산한 위치로 한다.

④ 결포장의 전후면과 양측면에는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약효 보증기간은 전면과 측면에 표기하되 상자 높이가 낮아 표기가 곤란할 때에는 여백에 표기할 수 있다.

※ 수도용 농약에 있어서 품목명과 상표가 동일한 경우와 앞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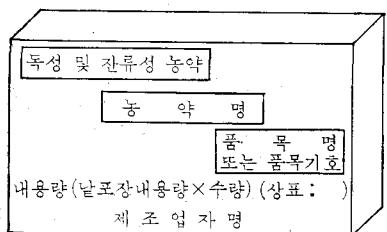
로 신규 고시되는 품목은 상표란에 제 2 항 제 2 호의 단서 규정에 의한 품목명을 표기한다.

※ 제조(수입)모집단 번호란에 제조년도를 다음 예시와 같이 표시한다. 라벨의 경우도 또한 같다.

“예 : 81-000”

⑤ 중간상자의 전후면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상자높이가 낮아 표기가 곤란할 때에는 약효보증기간란을 여백에 표시할 수 있다.



※ 수도용 농약에 있어서 품목명과 상표가 동일한 경우와 앞으로 신규 고시되는 품목은 상표

란에 제 2 항 제 2 호의 단서 규정에 의한 품목명을 표기한다.

⑥ 완제품 수입일 때는 제 5 조 제 1 항의 “별표 1” 및 제 4 항 제 5 항의 제조업자명란에 수입 업자명 및 소재지와 제조국 및 제조원을 각각 구분표기하여야 한다.

제 6 조(표기내용 승인절차) ① 농약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제 5 조 제 15 조 제 17 조 및 제 18 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 사항만으로 표기내용(안)을 작성, 농약공업협회장에게 제출한다.

② 농약공업협회장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출한 표기내용(안)을 품목별로 검토하여 별지 제 1 호 서식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매월 1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농약표기 내용을 확정 국립농업자재검사소장(이하 “자재검사소장”이라 한다)과 농약공업협회장에게 통보하고 그결과를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④ 확정된 농약표기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날포장지 또는 전단, 팝플렛 등 각종 선전문이 협소하여 제 3항의 확정표기내용의 전부를 게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적용 병해충에 대한 사용법, 해독방법, 특징등의 일부를 선택게재 할 수 있다. 특히 선전문등에는 상표만의 표기를 금지하고 반드시 농약명과 품목명 또는 품목 기호를 병기하여야 하며(상표의 크기는 품목명 또는 품목기호 크기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표는 반드시 상표라는 문자를 앞에 표시해야 한다) 안전 사용 기준을 표기하여야 한다.
- ⑥ 농약의 품목명과 상표가 동일한 경우에는 포장지라벨 및 선전문등에 상표의 표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 칙

- (시행일) 이 고시는 1981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 (폐지) 고시제 81-5호는 1981년 5월 9일부터 이를 폐지한다.
-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수도용 농약포장재 (1980년 말 이월재고 포장재 제외)는 품목명란에 품목기

호의 스틱카를 붙여야한다.

다만, 품목명과 상표가 동일한 경우는 상표란에 “품목명”이라는 글자를 표기한 다음에 품목명을 표기할 수 있으며 여백이 없는 경우는 품목기호란 좌측에 표기할 수 있다.

② 수도용 농약의 품목명 표기에 있어서 유효성분란에 여백이 없어 제 5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81.12.31까지 제조하는 농약의 포장재에 한하여 기타 성분함유량(%)을 좌측으로 당겨 그 옆에 표기할 수 있다.

③ 수도용 농약의 품목기호표기와 관련하여 변경되는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포장지표기내용을 승인한것으로 본다.

- (농약포장재 승인)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농약 포장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자재검사 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등승인 신청서에는 자체품질 관리시험성적서와 국공립 검사기관 또는 공인기관의 용기검사 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자재수급상 불가피 할 경우에는 자재검사소장이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 할 수 있다.

(별표 1)

## 농약포장지 라벨 표기 방법

### 1. 유제 또는 액제 농약

<p>(주의사항)</p> <p>※독성·약해 및 저장 상의 유의사항 중 당 해 제품에 특히 해당 하는 사항</p> <p>(안전사용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작물명</td><td style="width: 33%;">사용시기</td><td style="width: 33%;">사용 수</td></tr> <tr> <td> </td><td> </td><td> </td></tr> </table> <p>(해독방법)</p> <p>※중독시 응급 또는 치 료방법 중 당해제품에 특히 해당하는 사항 (특정)</p> <p>※과대 광고나 사용자를 현혹시키는 내용과 특 정업자명의 기재금지</p>	작물명	사용시기	사용 수				<p><b>농 협 마 크</b></p> <p><b>독성·잔류성농약</b></p> <p><b>농 약 명</b></p> <p>내용량: l(ml)      품목명 또는                             품 목 기 호</p> <p>(상표: )</p> <p>약효보 증기간 . . 까지</p> <p>제조(수입) 모집단번호</p> <p>(성분) 유효성분: (수도용농)                             약품목명 % 기 타: % 공급처: 제조업자명: 소재지:</p>	<p>(적용병해충 및 사용량)</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작물명</th><th style="width: 25%;">적용회석</th><th style="width: 25%;">물 20l(1 말)당 사용량</th><th style="width: 25%;">병해충 배수</th></tr> </thead> <tbody> <tr> <td> </td><td> </td><td> </td><td> </td></tr> </tbody> </table>		작물명	적용회석	물 20l(1 말)당 사용량	병해충 배수				
작물명	사용시기	사용 수															
작물명	적용회석	물 20l(1 말)당 사용량	병해충 배수														
<p>※고지사항만을 기재 ※병뚜껑의 용량은 ml입니다. (사용방법 및 사용시기) ※적용병해충별 방제적기, 방 제방법, 살포약량 등을 농민 이 알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 게 표시한다.</p> <p>○사용한 빈병은 농·밭에 버 리지 마시고 마을단위 집 하장에 모아 안전하게 폐 기 합시다.</p>																	

비고: 1. 20~200ml 소포장의 경우 배열이 곤란할 때에는 약효보증기간란은 좌 우란에 기재할 수 있다.

## 2. 분제·입제·수화(용)제 농약

독성 잔류성 농약

농 협  
마 크

농 약 명

내용량

kg(g)

품 목 명 또는  
품 목 기 호

(상표 : )

(적용병해충 및 사용량)

작 물 명	적용병해충	회 쇠 배 수	10a(300평)당 또는 풀 20ℓ(1일) 당 사용량

(사용방법 및 사용시기)

(해독방법)

※ 유제·액제 농약과 동일

※ 유제·액제 농약과 동일

(주 의 사 항)

(특 정)

※ 유제·액제 농약과 동일

※ 유제·액제 농약과 동일

(안전 사용 기준)

※ 유제·액제 농약과 동일

약효보증기간	..... 까지
제조(수입)모집단 번 호	

성분 : 유효성분.....(수도용 농약 품목명).....%

기 타.....% .....

공 급 처  
제 조 업 자 명  
소 재 지

비고 : 1. 기재할 사항이 적을 경우에는 1열로 기재할 수 있다.